

문서번호	WS-QP-0428(rev. 1)
제정일자	2023.01.01
개정일자	
페이지	1 / 3

담당자	승인자
실무자	책임자

개정 이력

차 수	제(개)정 일자	시행 일자	주요 개정 내용
1	2023.01.01	2023.01.01	

	<h1>공정거래세부지침</h1>	문서번호	WS-QP-0428(rev. 1)
		제정일자	2023.01.01
		개정일자	0
		페이지	2 / 3

제 1 장 총 칙

1. **(목적)** 본 공정거래 규정 세부지침은 우수정기주식회사의 투명성·신뢰성을 높이고 공정거래를 달성하기 위한 공정거래규범의 실천지침으로서, 국내외 관련 가이드라인 및 법규에 기반하여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윤리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2. **(적용범위)** 본 공정거래 세부지침은 우수정기주식회사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. 또한 우수정기주식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거래처, 협력사 등 기타 계약업체 및 임시 고용 근로자가 반 부패·공정거래 실천 서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도 본 공정거래 세부지침을 준수해야 한다.

제 2 장 공정거래 원칙 준수

1. (공정거래)

- ① 우수정기주식회사는 『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』, 『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 등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경쟁을 하고, 경영진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자율준수를 적극 지원한다.
- ② 임직원은 협력업체나 거래처 등의 경영정보나 지적재산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.
- ③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종류의 담합을 금지한다.
- ④ 고객 및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과장·거짓광고를 하지 않는다.

2. **(동반성장)** 거래처, 협력업체 등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을 추구한다. 또한 거래처, 협력업체 등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지원한다.

제 3 장 위법행위 발생시 보고의무 내부고발 보호(신고와 보상)

1. **(공정거래위반 신고)** 임직원은 누구든지 회사의 공정거래 규범 및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회사의 감사실, 준법관리인 및 기타 신고센터 전담자(전담부서)에 보고하여야 한다.
2. **(신고자 보호)** 감사실, 준법관리인 및 기타 신고센터 전담자(전담부서)는 공정거래규범 및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,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.

	<h1>공정거래세부지침</h1>	문서번호	WS-QP-0428(rev. 1)
		제정일자	2023.01.01
		개정일자	0
		페이지	3 / 3

3. (보상체계) 공정거래규범 및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회사의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한 경우, 회사는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 4 장 『공정거래규범』 및 『공정거래 세부지침』 점검 및 교육

1. (공정거래 점검)

- ① 우수정기주식회사는 공정거래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, 「공정거래규범」 및 「공정거래 세부지침」의 업무적용 시 해석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본부장 및 감사실장 등 준법 담당자에 보고하고 협의하며, 주요 사안은 감사실장 및 대표이사에게 그 해석을 요청한다.
- ② 우수정기주식회사의 공정거래의 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율준수 체크리스트를 통해 공정거래규정 이해도를 점검하고 공정거래수준의 자가진단의 활동을 실시한다. 이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취약점을 파악하고 조치한다.

2. (공정거래 교육)

- ① 본부장 및 실장은 신입직원 및 임직원에 대하여 「공정거래규범」 및 「공정거래 세부지침」을 준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준수 및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교육 후 모든 임직원은 「반부패·공정거래 실천 서약서」에 서명 후 제출해야 한다.
- ③ 자회사, 계약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.
- ④ 공정거래규정 위반행위가 발생 시, 이에 대한 사항과 조치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지침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